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7837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783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소157552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11. 20

판결 선고 2021. 1. 22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소1575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 500, 000원 및 그 중 15,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9 . 9. 1.부터, 1,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12 . 3. 30.부터, 1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3 . 10. 1. 부터,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3 . 11. 18. 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 C과 피고의 부(父) D은 2004 . 6. 경 동업계약에 따라 염료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D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 C은 2013년 초순경 D이 원고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 소하였는데, D은 그 중 일부의 고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 8. 29.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 8. 29. 선고 2014고단393판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D은 2004. 9. 1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원고 회사가 받을 물품대금을 D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운반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D 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81,943,000원을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률상원인 없이 퇴직금, 가수금 변제등의 명목으로 합계 27, 500, 0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D의 아들로서 2009. 9.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대납한 공사대금, 가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 500,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중 수익이 법률상원인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하는 바, 앞서든 증거들만을 제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의 부 D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 범죄를 범하였고, 자 금관리가 엄격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는 2009. 9. 1. 경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5, 000, 000, 2012. 3. 30. 대납한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1, 500, 000원, 2013. 10. 1.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10, 000, 000원, 2013. 11. 18. 거래처 조의금 명목으로 1, 000, 000원을 원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 개인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금 거래 내역과 원고 회사의 내부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3) 그에 반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20. 12. 18.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 피고가 D과 공모하여 화물운반비로 위장하여 합계 13, 202, 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이수진 판사 박동복